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 3. 김민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 1. 6.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2.18.) :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5.7.22.) : 상정 · 제안설명 · 축조심사 ·
의결(원안가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8.27) :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김민전의원)

현행법에서는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투자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인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다수의 사립대학이 기금의 적립금을 활용한 금융투자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은 바 있는데, 해당 학교의 대부분은 기금운용심의회에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1명만 두고 있어 투자 심의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음.

이에 기금운용심의회는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인위원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 포함하도록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립대학의 재정건전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2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천우정)

개정안은 기금운용심의회에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1명에서 2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생략)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제2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② ----- ----- ----- ----- ----- ----- -----2명-----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사립대학의 자산운용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지적¹⁾되어 왔음. 이에 대응하여 사립대 적립금의 자산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 기금운용심의회 설치를 명문화하고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²⁾이 통과되었으나, 이후에도 다수의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이 금융투자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임.

반면, 기금운용심의회외부전문가 비율을 보면, 다수의 기금운용

1) 사립대 적립금 투자로 280억 손실...경남대·중앙대·아주대 순, 2013.10.13., 뉴시스
8조 대학기금 '깜깜이' 운용...투자 시스템 구축 시급, 2017.6.19., 연합뉴스
사립대, 지난해 적립금 투자 '183억 손실', 2022.9.26., 이투데이

2) 의안번호 제2010049호, 대안

심의회가 외부전문가를 1명만 두고 있고, 기금운용심의회³⁾의 평균 인원이 증가 추세에 있음으로 인해 외부전문가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 기금운용심의회³⁾의 회의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³⁾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향은 사립대학의 기금운용에서 외부전문가의 영향력이 감소될 수 있음을 보여줌.

< 2021~2023년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별 기금운용심의회 외부전문가 현황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교비회계 외부전문가	1명	40개	45개	46개
	2명	19개	15개	15개
	3명	1개	0개	0개
기금운용심의회 평균 인원		8.72명	9.6명	9.57명
외부전문가 비율		15.49%	13.02%	13.01%
법인회계 외부전문가	1명	5개	9개	7개
	2명	3개	0개	2개
	3명	1개	0개	0개
	4명	0개	0개	1개
기금운용심의회 평균 인원		6.33명	9.11명	10.4명
외부전문가 비율		24.56%	10.98%	14.42%

<자료 : 교육부>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립대학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인 위원 수를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9(기금운용심의회 운영) ② 기금운용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적립금 기금의 목적이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改修)·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 학교의 교육여건 향상에 있음을 고려할 때, 동 기금의 수익률 제고는 사립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또한, 기금운용은 회계, 재무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함에도 대다수의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인 교원, 직원, 학생,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므로 외부전문가의 비율 증가는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의 기금운용 성과가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 필요한 방안으로 보여짐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문정복)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과정을 거쳤음.

[붙임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명”을 “2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운용심의회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제3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외부 전문가인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3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 치 등) ① (생 략)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 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에 따른 교원, 직원 및 재학생 은 각각 2명 이상, 제2호에 따 른 외부 전문가는 <u>1명</u> 이상 포 함하여야 한다.	② ----- ----- ----- -----. ----- ----- ----- <u>2명</u>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